

# 2025

## 소방공무원법, 위험물관리법 소방승진 소방법령4

엠북 소방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종합
- ★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2시간 50분 완성, 암기코드 제공

도서명 : 소방승진 소방법령4

ISBN : 979-11-94286-98-1

발간일 : 2025-03-28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mailto:by4782@gmail.com)

정가 : 21,000원



# 소방승진 소방법령 4

## [목차]

### 제1권 소방공무원법

제1절 총칙(p7)

제2절 임용(p12)

제3절 승진(p74)

제4절 복무(p94)

제5절 보칙·벌칙(p119)

### 제2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p123)

제2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p139)

제3장 제조소등 위치·구조·설비 기준(p171)

제4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p238)

제5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p252)

제6장 위험물의 운반 등(p293)

제7장 감독 및 조치명령(p302)

제8장 보칙(p307)

제9장 벌칙(p325~331)

##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초록색은 최근(1~2년내) 개정 내용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1권 소방공무원법

(이하 법)

### [관련 법령]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용어/약어]

부령은 행정안전부령

청장은 소방청장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실시권자는 시험실시권자(시험실시기관이나

시험실시권 위임 받은 자)

공채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공채는 소방공무원 공채

간부시험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제1절 총칙

1~5조

### 1. 목적

- 소방공무원의 책임과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 규정

## 2. 정의

가. 임용 신승전파/ 강휴직정/ 강복면해파

-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나. 전보

- 같은 계급과 자격 내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다. 강임

- 동종 직무 내 하위 직위에 임명

## 라. 복직

- 휴직/직위해제,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 포함) 중인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

## 3. 계급 구분 총정감준/ 정령경위/ 장교사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 4. 소방공무원인사위(이하 인사위)

### 가. 설치

-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청장 자문을 위해 소방청에 둔다

· 단, 시도지사가 임용권 행사시 시도에 둔다

## 나. 구성/운영(소방공무원 임용령)

### 1) 구성

- 위원장 포함 5~7명

- 위원장

· 소방청 인사위는 소방청 차장

· 시도 인사위는 소방본부장

- 위원은 인사위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 중 임명

### 2) 위원장의 직무

- 사무 총괄, 인사위 대표

- 위원중 최상위 직위 또는 선임 공무원이  
대행

### 3) 회의

-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됨
- 재적 2/3 이상 출석, 출석 과반 찬성 의결

### 4) 간사

- 약간인 됨
- 인사위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 임명
- 위원장 명 받아 사무 처리

### 5) 심의사항의 보고

- 위원장은 지체없이 인사위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 보고

## 6) 운영세칙

- 인사위 의결 거쳐 위원장이 정함

## 다. 기능(심의사항)

- 인사행정 방침, 기준, 기본계획

- 인사 법령 제정/개정, 폐지

- 청장/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 제2절 임용

6~13조

# 1. 임용권자

## 가. 임용

1) 소방령 이상은 청장 제청으로 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용

- 단,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은 청장이 함

2) 소방경 이하는 청장이 임용

## 나. 임용권 일부 위임

- 소방공무원 임용령 따름

## 1) 대통령

- 청장에 소방청과 소속기관 소방청/소방령,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 시도지사에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단,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임용권 위임

## 2) 청장

- 시도지사, 소방청 소속기관장에 위임

a) 중앙소방학교장에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장에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령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권한과 소방경 이하 임용권 위임

- 중앙119구조본부장은 119특수구조대 소방경 이하에 대한 119특수구조대내 전보권을 119특수구조대장에 재 위임

b) 시도지사에 다음 위임

- 시도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단, 소방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 시도 소방경 이하 임용권

3) 시도지사

- 소속기관 장에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  
재위임

-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장에  
· 관할구역안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경 이하(서울소방학교, 경기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소방령 이하)에 대한  
해당 기관내 전보권과 소방위 이하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권한 위임

4)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청장에 보고

5) 청장은 정원 조정, 소방기관 간 인사교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시 임용권 직접 행사

6) 임용권자(임용권 위임받은 자 포함)은 대통령령(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 인사기록 작성/보관

## 2. 신규채용

### 가. 개요

1) 원칙: 공개경쟁시험

- 단, 소방위는 소방간부후보생(대통령령상 자격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자)로서 정해진 교육훈련 자 중 신규채용

##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채등)**

### a)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채)**

-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 대상 경쟁으로 채용

b) 다수인 대상 시험이 부적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채용시험

## 나. **경채등의 요건 등**

## 1) 퇴직 소방공무원 재임용

-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해 휴직했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상 부상/질병 휴직은 5년)내,
- 퇴직시 재직 계급이나 상응 계급으로 재임용

## 2) 공개경쟁시험이 부적당해 자격증 소지자 임용

-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및

## 경력기준에 해당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연구 실적  
있거나 소방 전문기술교육 받은 자 임용

가) 근무/연구 실적 있는 자

a)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 관련 직무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 소방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 근무 경력자나 국가기관에서  
구조업무 관련 근무 경력자를 해당 부문